■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[별지 제2호서식]

2025년 제11회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[6호 안건: 검단신도시 문화공원3블럭,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서구	심의일자	2025. 11. 25.

건축종별	[○] 신축, [ ]증축, [ ]대수선, [ ] 기타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인천도시공사
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문화공원3블럭		
	지번 문화공원3블럭	관련지번	
	대지면적 2,006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준주거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1,198㎡	건폐율 59.72%	층수 지하: 2층/ 지상: 5층
	주용도 판매시설(상점)	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	건축물 동수 1동
	최고높이 27.56m	용적률 139.27%	연면적 합계 9,295.73㎡

구 분	주요 심의 내용
(건축)분야	**(심의위원1)** - 이용객의 편리성을 위한 내부 화장실 추가 검토 권장 **(심의위원2)** - 옥상 정원 관리 용이하도록 관수 등 조치 요망 - BIPV가 실현되도록 디자인 요망 - 당초 설계의 Detail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치 요망
(구조)분야	-
(시공)분야	**(심의위원3)** - 상부 구조 E.J. 반영 적정함
(토목)분야	**(심의위원4)** - 토목 분야의 사전 의견 조치계획은 적정히 수립된 것으로 확인되며 1) 오픈 컷 구간의 수평변위 관리기준은 흙막이 구조가 아니므로 비탈면 유지관리 실무 매뉴얼(2018. 국토교통부)의 비탈면 지표변위 기준도 참고 검토 바람 2) 파일 기초 상단고가 오픈컷 경사면에 위치(표기)되어 혼동스러울 수 있으므로 기초 상단고 레벨을 확인이 쉽도록 명기 바람
(행정)사항	**○ 사전검토의견 및 건축위원회 심의의견 반영 할 것** ○ 심의내용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,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검토·확인하시기 바람 ○ 구 건축위원회 심의는 「건축법」제4조 규정에 따라 정한 건축계획 관련 기술적인 사항을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, 건축 인·허가 때 관계 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

심의결과	[ ] 원안 의결 **[○] 조건부 의결** [ ] 재검토 의결 [ ] 부결

근거조문

건축위원회 심의기준	9.3 심의결과는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정하며, 조건부 및 재검토 의결은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검토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장이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한다. 가. 원안의결 :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나. 조건부 의결 : 상정 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다. 재검토 의결 :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라. 부결 :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. 단, 2.3

	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. 9.6 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는 [별지 제2호]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, 동 서식에 따라 건축행정 시스템에 등록하여 건축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작성방법

1. 심의 결과는 “원안의결”, “조건부 의결”, “재검토 의결” 또는 “부결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
2. “주요 심의 의견” 란은 개인 식별(이름, 소속 등)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기재(필요 시 심의위원은 표기를 甲, 乙, 丙으로 하는 등 임의로 기재 가능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